

(사)대한화장품협회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직인생략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금산빌딩 907호) /전화: 02-761-4203 /팩스*782-6659
담당부서 : 대외협력팀 담당부서장 : 송자은 부장 담당자 : 고정은 과장 e-mail: jenko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11-376호

시행일자: 2020.11.9.

수신자: 화장품 제조업자 및
책임판매업자 대표이사

참 조:

제 목: 「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의견 조회의 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-6785(2020.11.6.)호 관련입니다.

3.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구강용품(치약제 및 구중청량제) 표시사항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권장서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「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 고시안을 [붙임1]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.

4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[붙임2]의 양식에 따라 2020년 11월 23일(월)까지 우리협회(이메일: jenko@kcia.or.kr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1.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. 1부.

2. 검토의견서(양식)_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.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